



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2005. 1. 31(월)

# 지방직영공기업 설명자료

상하수도사업소

# 지방직영공기업 설명자료

## 지방직영공기업의 정의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본을 투입 경영의 주체가 되어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재의 생산·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

### □ 목 적

- 독립채산적인 기업회계 도입을 통한 경영합리화
- 주민복리와 서비스 증진과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
### □ 필요성

-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의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원칙
  - 수익자부담원칙 ⇒ 독립채산제(자기의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키는 경영제도)구현
- 사용요금의 기초가 되는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가능
  - 총괄원가보상의 원칙 ⇒ 지속적인 공공재의 서비스 공급체계 유지
- 사업책임관리자의 지정운영과 자율경영권 부여
  - 책임경영제의 구현 ⇒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
-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정확한 인식 가능
  -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⇒ 합리적인 사업운영계획 수립의 기초

### □ 경비부담

- 지방직영공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이 원칙
- 부족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등에서 보전
  -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
  - 공급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할 경우 생산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
  -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경비
  - 공기업회계 전환이전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
  -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비

### □ 기대효과

- 민간 경영원리인 자율경영체제를 통한 독립채산 기반조성
- 사업 경영성과의 정기적인 평가로 운영비용의 낭비요인 억제

## 기타특별회계와 지방직영공기업의 차이점

구 분	기타특별회계	지방직영공기업
• 회계처리	• 단식부기	• 복식부기
• 예산편성	• 세입 · 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예산 : 수익적수입, 수익적지출</li> <li>• 자본예산 : 자본적수입, 자본적지출</li> </ul>
• 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결산</li> <li>• 지방의회승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결산 :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인회계사의 감사</li> <li>◦ 지방의회승인</li> </ul> </li> <li>◦ 매년 재무제표 작성</li> <li>◦ 원가계산 등</li> </ul>
• 경영평가	• 재정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년 1회 경영평가</li> <li>◦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경영실적평가</li> </ul>
• 회계장부	• 징수부, 지출원인행위부, 지출부, 현금출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입예산정리부, 지출예산통제원장, 자금수입기록부, 자금지출기록부, 총계정원장, 계정별보조원장, 이월예산관리대장, 교부자금관리대장, 합계잔액시산표</li> </ul>
	• 공유재산관리대장, 건축물관리대장 및 물품관리장부	• 재고자산대장, 유형자산대장
	• 채권관리부, 채무관리부	• 차입금관리대장
• 회계관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징수관, 경리관, 지출원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수입금출납원, 세입세출외출납원, 물품출납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리자, 징수관, 기업출납원, 지출원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, 수입금출납원, 세입세출외출납원, 물품출납원</li> </ul>
• 법령적용	• 지방재정법, 재무회계규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공기업법, 지방공기업재무회계규칙</li> <li>◦ 단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회계관련규정 적용</li> </ul>